

제전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6

발의년월일 : 1999년 3월 10일
발 의 자 : 민경환 의원 외 5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각종 입찰 참가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빈약한 시 재정을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확충코자 함.

2. 주요골자

- 입찰참가자외에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수의계약자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3조 요율 및 징수구분의 별표1, 제5조 징수방법을 개정

3. 개정근거 및 참고사항

- 가. 대법원 98주26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증 개정조례 무효확인 판결문 사본 1부.
- 나. '98. 4월간 법령상담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신청자에 대한 수수료징수 가부 1부.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중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란의 “가. 일반행정관계” “8)” 다음에 “9) 수의계약(1,000만원 이상)
1건당 수수료 10,000원”을 신설한다.

제5조제1항증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에 “수의계약서,” 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